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1)

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애로점
2. 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개선(WISE) 프로그램에 대하여
3.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 위험성평가 및 법정작업환경측정의 비교
4. 향후 과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의 접목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애로점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21) 결과에 의하면,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수가 413만여개소(전체 99.0%)이며, 소속 근로자 수는 1,480만여 명(전체 65.2%)이었다. 그중 5인 미만 규모 사업체만 따로 보면, 사업체 수가 333만여개소(전체 79.8%), 소속 근로자 수는 604만여 명(26.6%)이었다.

또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체(790명)의 81%를 차지했다는 점을 미루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중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보다 산재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취약 원인〉

그럼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사고에 왜 취약할까?

첫째, 소규모 사업장들 특히 제조업체 중에는 3D 업종이 많아 작업환경이 대체로 열악하지만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작업환경개선에 비용을 쓸 여지가 부족하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는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서 사업장에서 건강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챙길 내부 직원은 현장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 밖에 없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를 지도 · 조언하고 사업주를 보좌해야 하는데 이들의 선임 의무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없다 보니 관리감독자의 선임과 사업장 내의 역할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근로자들이 산재예방을 위해 따라야 할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없어 근로자도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및 〈표 1〉 참조).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근로자들이 산재예방을 위해 따라야 할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그림 1〉 50~300인 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림 2〉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표 1〉 소규모 사업장과 중대규모 사업장 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차이

비교지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규모 사업장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만 선임하면 됨 (20인 이상 제조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의무 없음	의무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없음	의무 있음
유해 · 위험 방지조치 (안전보건표지 부착/게시)	의무 있음	의무 있음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 ·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MSDS 비치)	의무 있음	의무 있음
작업환경측정	의무 있음	의무 있음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의무 있음	의무 있음

〈그림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메탄올중독사고의 시스템적 원인 분석 (문헌 1 참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재정지원제도와 문제점〉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 즉 전국 각지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20인 미만 사업장(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비용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23개소 센터와 21개 분소가 설치되는 것에 그쳐 커버리지가 너무 낮다는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은 외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그동안 20인 미만 사업장에 제공되어 온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사업(건강 디딤돌 사업)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도울 뿐 작업환경개선이나 건강진단 사후관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23개소 센터와 21개 분소가 설치되는 것에 그쳐 커버리지가 너무 낮다는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은 외부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